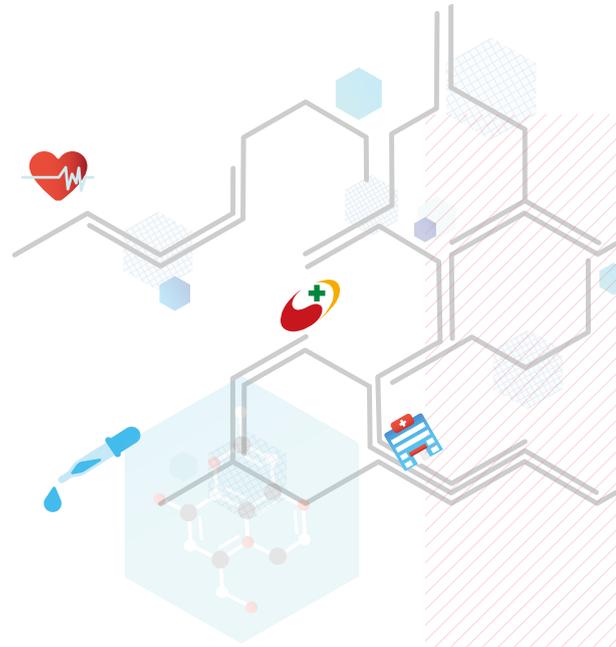


산업보건 주요뉴스



안전보건공단, 4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실시

안전보건공단은 4월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다.

이번 검사 및 안전진단은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,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.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.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영업허가 대상 여부에 따라 1~2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.

설치 및 정기검사 결과,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,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에 따라서는 4~12년 주기로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. 검사 및 진단 신청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화학시설검사팀으로 하면 되며,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. ☺